

비상경제장관회의
23-7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2023. 3. 2.

관계부처합동

순 서

I. 추진배경	1
II. 국내외 위조상품 정책동향 및 시사점	3
III. 추진 전략 및 과제	8
1. [사전예방]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 강화	
2. [피해구제]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지원 확대·고도화	
3. [대응기반] 위조상품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	
IV. 추진 체계	15
V. 향후 추진일정	16

I. 추진배경

< 위조상품(counterfeit & pirated goods) 개념 >

타인의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counterfeit goods)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pirated goods)으로 구분(OECD, Global Trade in Fakes - A Worrying Threat, '21)

□ 위조상품이 자유무역 확대 및 디지털경제전환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일자리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은 '00년 1,099억\$ (128조원)에서 '19년 4,640억\$* (541조원)으로 약 4.2배 증가**

<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 >



* 전세계 반도체시장 규모 4,123억\$('19, 세계 반도체 시장통계기구(WSTS))와 비슷한 수준

** 전세계 무역규모 중 위조상품의 비중도 '00년 1.85%에서 '19년 2.5%로 상승

- 우리기업들의 창의성과 브랜드에 무임승차하려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우리 혁신기업들의 수출 및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

* 전세계 위조상품 국제무역 피해국('17~'19, OECD) :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독일, (4위) 이탈리아, (5위) 덴마크, (6위) 스위스, (7위) 일본, **(8위) 한국**, (9위) 영국, (10위) 스페인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으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19년 기준) 추산('22, 지식재산연구원) : (수출 등 매출액 축소) 약 22조원, (일자리 손실) 31,753개(전체의 0.7%), (세입 감소) 4,169억원

□ 주요국은 위조상품을 국가경제 발전 및 기업성장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로 위조상품 방지대책 강화



美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정부와 업계의 대응조치를 정리한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 불법유통 방지 대책(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발표('20.1)



EU는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유럽지재권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PRs)' 설치('09), '지재권침해 보고서 발표('20.6) 등 지재권침해대응 강화 중



英 지식재산청(IPO)은 새로운 지식재산(IP) 범죄·침해 대응전략인 'IP침해방지 전략 2022-2027(IP Counter-Infringement Strategy 2022-2027)' 발표('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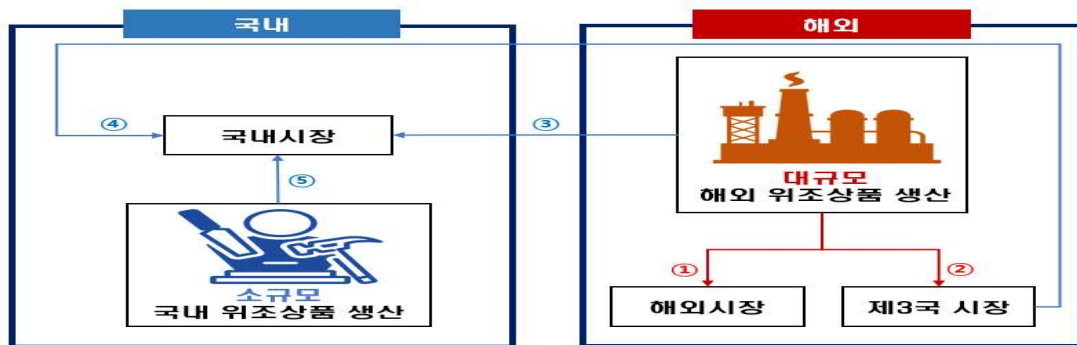
日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우선과제 중 하나로 '모방품 대책 강화' 반영('19.8) → '20.4월부터 특허청에서 모방품 종합 대응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종합대책** 마련·추진 필요

① K-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는 지재권침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따라 '해외 피해'와 '국내 피해'로 구분

- **(해외 피해)** ① 위조상품이 해외 현지에서 생산되고 유통,
② 해외 현지에서 위조상품이 생산되어 제3국으로 수출
- **(국내 피해)** ③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
④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생산된 후, 제3국을 거쳐 국내 수입,
⑤ 국내에서 위조상품이 생산되고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



② K-브랜드 위조상품 유형은 ① 정품의 상표 위조, ② 정품 외관모방, ③ 정품 외관·포장의 캐릭터·표지 등 모방, ④ 한류편승 행위

위조상품 지재권 침해유형	실제 사례	
	정품(등록권리)	위조상품
① 정품의 상표 위조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	
② 정품 외관 모방 (디자인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③ 정품의 외관·포장의 캐릭터·표지 모방 사용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④ 한류편승 행위 (한국기업의 제품으로 위장)	<매장간판에 KOREA 표시> 	<판매상품에 한국어 표시> 

Ⅱ. 국내외 위조상품 정책동향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위조상품 정책동향

- √ 기업 자율적인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과 함께 법·제도 개선도 추진
- √ 온라인플랫폼 및 위조상품 빈발업종 중심으로 위조상품 대응지원 강화

- **(미국)**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법·제도 개선, 민관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빈발업종 단속 및 정보공유 강화

사전 예방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IP절도, 위조상품, 사이버안보 대응컨설팅 제공⁽²¹⁾ •민간과 정부에서 위조상품 예방·대응 정보제공 및 인식제고
피해 구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및 단속업체 정보제공(국제위조상품방지연맹) •민관협력을 통해 지재권센터·관세국경보호청의 업종별 위조상품 단속 강화
대응 기반	•민관이 위조상품판매자 데이터공유를 위해 '전자상거래작업반' 구성·운영⁽¹⁷⁾ •해외 12개국에 IP담당관 파견 및 위조상품 대응 원스톱사이트 운영 •온라인플랫폼 책임강화,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공개 강화 등 제도개선

- **(유럽)** 위조상품 경보·정보제공 등 자율적인 사전예방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및 주요업종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 지원 추진

사전 예방	•온·오프라인 위조·복제품 마켓 경보(격년) 등 •위조상품 대응기술 정보제공, 블록체인지반 정품인증플랫폼 개발
피해 구제	•온라인플랫폼 위조·복제품 모니터링 및 판매차단 지원 확대 •업종별(의류, 악세사리, 스포츠장비, 약품, 차부품, 핸드폰, 화장품 등) 위조·복제품 단속
대응 기반	•지재권침해 단속정보 공유, 위조상품 피해 실태조사 실시 •유럽지식재산청에 지재권침해 대응전담조직 신설·운영

- **(일본)**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 사전예방 강화, 온라인플랫폼상의 위조상품 차단 지원, 모방품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전 예방	•해외 지재권출원 비용 및 무단선점된 일본기업의 지재권 무효·취소 지원 •해외 지재권침해피해 예방지침·매뉴얼 제공, 모방품 대응기술 정보제공⁽²¹⁾
피해 구제	•위조상품·불법복제품 행정단속, 세관등록·단속 등을 위한 소요 경비 지원 •온라인플랫폼의 모방품 자율대응 및 기업-온라인플랫폼 간 협력 지원
대응 기반	•해외 현지 모방품 대응체계 구축, 해외 모방품 피해 실태조사 추진 •위조상품·해적판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상표·의장법 및 관세법 개정

2 국내 위조상품 대응 정부지원 현황

- ① **(특허청)** 해외 진출기업을 위해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현지 초동대응(코트라)과 함께 국내에서 심층대응(지식재산보호원) 병행 지원

- (코트라) 해외 지재권 출원, 지재권침해피해 조사·단속, 법률상담 등 현지 초동대응 지원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 해외IP-DESK 설치현황 : ('14) 5개국, 10개소 → ('22) 11개국, 17개소



- (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기업에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이의신청, 무효심판, 민·형사소송 등) 제공

* 해외 상표 무단선점 :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기업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권 무단 선점 → 국내기업 해외진출 방해 및 무단선점 상표권으로 위조상품 출시

<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대응 지원실적 >

구 분	'17	'18	'19	'20	'21	'22
해외 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건)	977	1,666	1,749	4,522	4,977	4,65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건)	20,302	21,854	21,242	165,460	247,396	252,544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개사)	59	108	82	83	122	93

- ② **(외교부)** 해외 지재권이슈 대응을 위해 현지 정부당국과 협력 강화

- (특허관 해외파견) 지식재산 침해피해·분쟁이 많은 해외지역에서 현지당국과 외교채널을 통한 기업지원을 위해 특허관 파견 확대

* ('14) 美(1명), 유럽(1명), 日(1명), 中(1명), WPO(1명) → ('22) 美(1명), 유럽(1명), 日(1명), 中(2명), WPO(1명)

- (지재권 중점공관) 해외 지재권이슈에 대한 현지당국 협력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40개) 지정·운영('12)

지역(개수)	지재권 중점공관
아시아·태평양(17)	중국, 광저우, 칭다오, 선양, 대만, 호주, 뉴질랜드, 상하이,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주(6)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유럽(12)	제네바,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러시아
중동·아프리카(5)	이스라엘, 남아공,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③ (문체부) K-콘텐츠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침해 대응 지원

- (협의체 운영) 해외 콘텐츠 지재권 침해피해 민관 공동대응을 위해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운영(‘19.10 발족, ‘20.6 확대·격상)

* 문체부(총괄),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부처, 8개 공공기관, 18개 콘텐츠 협·단체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총 6회 개최)

- (저작권 침해대응) 현지 정부(중국 국가판권국, 베트남 문체부, 태국 지식재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및 구제조치*를 통한 침해대응 지원

(대응사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의 베트남 불법유통에 대해 현지 로펌과 연계하여 온라인 쇼핑몰 URL 삭제 및 오프라인 상점 내 물품 폐기 처리(‘21.7~11)

- (해외출원 지원) K-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

* 해외현지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실적 : 총 213건(‘16~’22년)

④ (관세청)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불법수출입 단속 강화

- (우범정보 수집) 국내·외 유통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K-브랜드 침해 정보수집 및 권리자가 보유한 자체정보 입수

- (불법 수출입단속) 위조상품 반입 동향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조 K-브랜드 화장품 등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단속

*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관세청) : 29,190건(‘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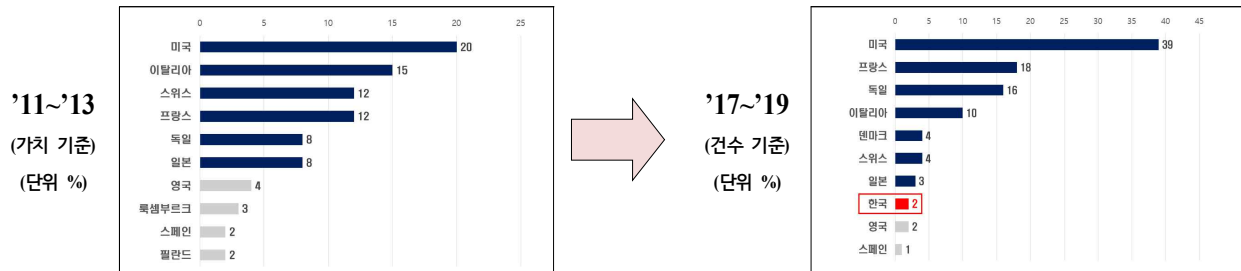
⇒ 정부가 K-브랜드 해외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피해 구제 등을 지원(‘22년 124억원)하여 연 1조원 이상 경제적 피해예방 성과 달성

3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①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증가 추세이나, 피해 사전예방 지원 미흡

- 최근 한류확산 및 국내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로 K-브랜드에 대한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전세계 국제무역 중 위조상품 상위 10대 피해국(OECD) >



- 해외 위조상품 사전예방에 중요한 <국가별 對중국 수출액당 상표출원(17~21,건/억\$)>>
국내기업의 해외상표 확보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저조*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 출원건수와 한국무역협회(K-stat) 무역통계 조합

- 우리는 정부주도 피해구제 중심이나, 주요국은 위조·복제품 마켓 경보(美), 위조방지 기술확산(EU, 日) 등 민간주도 사전예방 병행

② 해외 위조상품 피해구제 지원범위가 제한적, 지원내용도 단편적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지역이 중국·동남아 등 8개 지역에 국한 → 미국, 유럽, 중동 등 지원 곤란



(현장 의견) 중국·동남아 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국가 확대 필요

-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특정 업종(식품, 패션, 화장품 등)에 빈발하고 있으나, 개별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도 미흡

(현장 의견) 식품 등 특정업종에서 해외 온·오프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 발생하므로, 위조상품 빈발업종별 협단체 협력 및 기업 공동지원 강화 필요

- 해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해외 세관의 단속이 중요*하나, 해외 세관을 활용한 위조상품 국경조치 지원 미흡**

* 글로벌 기업 A社は 해외 위조상품 단속실적 중 70~80%가 세관단속이라고 응답(22.2)

** 「세관단속 희망기업 모집 → 세관 대상 위조상품 설명회 → 단속」 등 유기적 연계지원 미비

※ 국경조치 : WTO TRIPs 협정에 따라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기업들이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특허청 등록과 별개)하면, 세관은 해당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3 국내외 위조상품 대응 지원체계 및 법·제도 미흡

- K-브랜드 침해가 전통식품 명칭*, KF 인증 마스크** 등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국내 및 해외 대응체계 미비

*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된 'KIMCH'에 대해 외교부·농식품부 등이 무효조치(21.12)

** 중국산 식약처 미인증 KF 마스크가 중국·일본 등에 판매되어 국내업체 피해(21)

(현장 의견) “국내기업들이 해외지재권 침해피해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지원체계 제공 필요”

-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취약

* 국내외 지재권분쟁 대응업무 추진근거가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1개 조문만 반영

< 정책적 시사점 >

- ✓ 해외상표 확보, 위조방지 기술 활용 등 기업의 사전예방 지원 강화
- ✓ 해외 온라인플랫폼, 위조상품 빈발업종, 국경조치 등 지원 확대
- ✓ K-브랜드 위조상품 국내외 지원체계 정비, 법·제도 개선 추진

Ⅲ. 추진 전략 및 과제

【 비 전 】

우리 혁신기업의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추진 전략 】

- ✓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 강화
- ✓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지원 확대·고도화
- ✓ 위조상품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

분 야	주요 추진과제
1 사전 예방	1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등 예방체계 구축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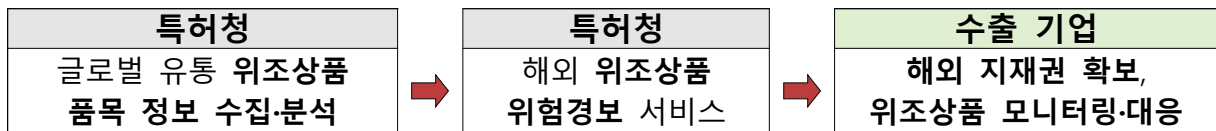
1 [사전예방]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 강화

- ◇ 위조상품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해외 상표 권리화 지원 및 위조 방지기술 보급 추진

1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등 예방체계 구축(특허청)

- (위험경보) 해외 위조상품 동향조사 후, 위조상품 위험 업종(10대)·국가(10개국) 등 경보(연 1회) → 기업의 자율적인 사전예방 유도(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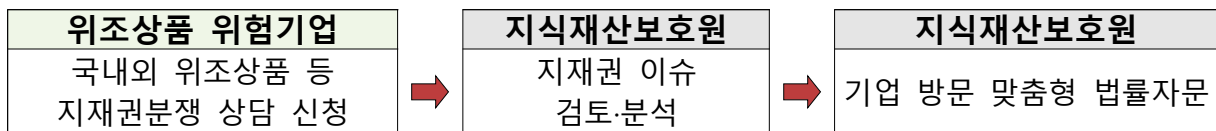
<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서비스 개요 >



- (맞춤형 지원)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산전문가*를 통해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23)

* 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사·변호사 15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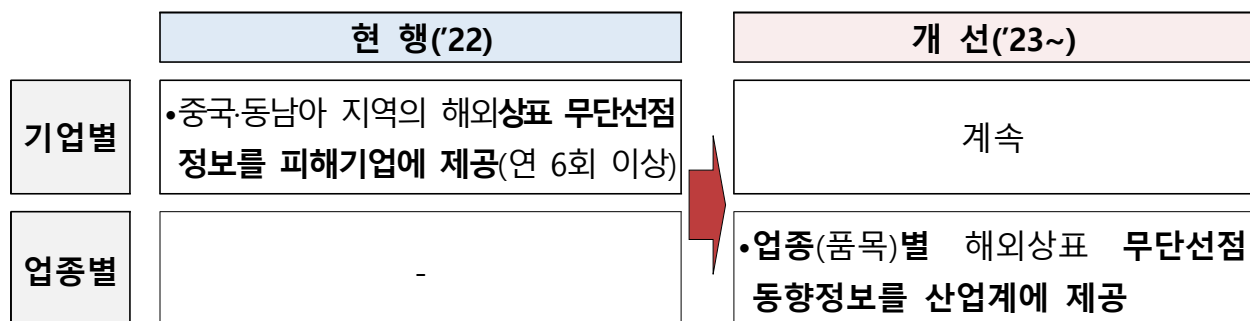
< K-브랜드 침해피해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



2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및 권리화 확대(산업부·중기부·문체부·특허청 등)

- (무단선점 정보제공)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피해 기업에 지속 제공하고, 산업계에 업종별 동향정보 신규 제공(23)

<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개선방향(특허청) >



- (해외상표 확보* 지원) 주요 산업분야별로 해외 수출기업 지원 사업에 해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확대(계속)

* 해외 수출국가에서 지재권이 확보된 경우에만 법적대응 용이

< 수출기업의 해외상표 출원 지원 확대 방향 >

분야(부처)	현 행('22)	확대 방안*('23~)
일반공통(특허청)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계속
콘텐츠(문체부)	콘텐츠 해외현지 출원·등록 지원	계속
ICT(과기부)	K-글로벌 해외진출 지원	계속
농수산식품 (농식품·해수부)	농식품 현지화 지원	농식품 현지화 지원(농식품) 농식품 수출상품화(농식품) 수산식품 수출유망 상품화(해수)
중소·벤처 (산업·중기부)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산업·중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중기)

※ 각 부처의 해외 수출기업 지원사업에 ①해외상표 출원비용 지원항목을 신설하거나, ②기존 지원항목의 지원자금 사용 인정범위에 해외 지재권 확보를 허용

3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강화(기재부·특허청)

※ 위조상품 대응기술 : 위조상품 유통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되며,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①정품·가품 식별, ②유통이력 추적, ③위·변조 방지)로 구분

- 정품과 위조상품 간 구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위조상품 대응 기술 연구개발 및 민간 보급 지속 추진(기재부[한국조폐공사], 계속)

<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례(한국조폐공사) >

다방향 잠상패턴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	보안정보화 코드

- 공공·민간의 위조상품 대응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위조상품 대응 기술 안내서* 제작 및 위조상품 빈발 업계에 확산** (특허청, '23)

* 위조상품 대응기술 안내서(안) : 주요 위조상품 대응기술별 특징 및 종류(보안패턴, 위조방지 라벨, 물리적 표시, 특수 표기, 히든코드, 블록체인 등), 국내 업체 정보 등 제공

** 국내 위조상품 빈발 업종별 단체와 협력하여 관련 기업에 설명회 등 개최

2 **【피해구제】**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지원 확대·고도화

◇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확대하고, 위조상품 빈발 업종 및 세관·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 지원 강화

1 민간역량을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확대(특허청)

- (피해진단) 소규모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피해 진단서비스 신규 제공('23)
* 다수의 위조상품 피해 발생 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대응전략 컨설팅 연계
- (모니터링·차단)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기업맞춤형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전세계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23)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개선방향 >

	현 행('22)	개 선('23~) ¹⁾
지원 방식	•지식재산보호원 내부에 자체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운영	•지식재산보호원이 외부에 있는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 활용
대상 지역 ²⁾	•8개 국가 (중국·동남아)	•최대 114개 국가 (중국·동남아 + 미국, 유럽, 중남미 등)
모니터링 대상 ²⁾	•19개 전자상거래플랫폼	•최대 1,604개 온라인플랫폼 (전자상거래플랫폼, 소셜미디어플랫폼 등)

1) '22년 하반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전면 확대

2)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 제출자료 토대로 산출

2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지원 신규 추진(특허청)

- (현황) 해외 위조상품 대응지원이 개별기업에 대한 단기지원(1년) 위주로 되어 있어, 해외 현지 위조상품의 근본적인 해결 곤란

< 화장품 기업 간담회('22.10) >

K-뷰티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방지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간 패키지 지원이 중요

- (개선)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해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고, 위조상품 빈발 업종별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설('23)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전략 컨설팅 개선방향 >

지원대상	현 행('22)	개 선('23~)
개별기업	•개별기업 지원(1년) •대응전략별로 신청·선정	< 계 속 >
협단체 (기업 공동)	—	•위조상품 빈발업종* 협단체 소속 기업들에 2년 이상 장기 지원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 증거수집, 행정단속·민형사소송 등 패키지 지원

* 식품, 패션, 화장품, 의료기기, 캐릭터, 제약바이오 등

3 국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세관·특사경 단속지원 강화(특허청·관세청·문체부)

- (국내) 국내에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강화(특허청·관세청·문체부)
 - (특허청)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업종 및 피해기업을 특정하여 상표 특사경의 수사 강화*(계속)
 - * (협단체) 위조상품 신고 → (특허청) 온오프라인 증거수집 → (특허청) 위조상품 생산·유통업체 단속
 - (관세청) 한국상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수출입 단속을 강화하고, 지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확대(계속)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의 저작권 침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K-콘텐츠 불법복제물 단속 확대(계속)
- (해외) 해외 위조상품 단속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대한 국내기업 지재산권등록 지원 및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확대(특허청·관세청)

< 해외 세관의 위조상품 단속지원 강화방향 >

	현 행('22)	개 선('23~)
해외 세관 지재산권등록	■ 무역관련지재산권보호협회(TIPA)(관세청)	■ 무역관련지재산권보호협회(TIPA)(관세청)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특허청)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 (대상국가)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 (대상기업) 특허청(KOTRA) 모집기업	■ (대상국가)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등(24~) ■ (대상기업) 특허청(KOTRA) 모집기업 + 관세청(TIPA) 추천기업

3 [대응기반] 위조상품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

◇ 국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1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신규 운영(특허청)

-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 중심*으로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구성('23.下)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 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요 수출기업 등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대응 노하우 공유, 개선의견 등 수렴 및 정책 반영('23.下)

<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안) >



2 해외 현지 지재권 침해피해 지원체계 확충(외교부·문체부·산업부·특허청)

-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 제도를 개편**하고,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 제고 추진(외교부·특허청, '23)

* 지재권 중점공관(40개) : 아태지역 17개, 미주지역 6개, 유럽 12개, 중동·아프리카 5개

** 지재권 중점공관 제도 내실화를 위해 중점공관 제도개편 완료 예정('23년 상반기)

- 지재권담당관 회의·워크숍 등을 통해 해외 지재권보호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 점검·보완(외교부)
- 지재권 중점공관 부임자·담당관 지재권 교육 신설 추진(특허청)

- 해외 지재권침해 신속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IP-DESK*, 해외 저작권 보호기관 등** 협업 강화(외교부·문체부·산업부·특허청, '23)

* IP-DESK(11개국 17개소) : 미국(2개), 중국(6개), 독일(1개), 일본(1개), 베트남(1개), 태국(1개), 인도(1개), 인도네시아(1개), 필리핀(1개), 러시아(1개), 멕시코(1개)

** 해외 저작권 보호기관 : 저작권 해외사무소(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4개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10개소)

3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법제화(특허청)

- 온라인플랫폼에 위조상품 발견·신고 시 판매중단 조치의무 부여, 조치의무 미이행시 침해책임 발생 및 이행시 면책 규정
- 상표권자가 온라인플랫폼에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제공 요청 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보제공 명령 도입

< 온라인플랫폼 책임강화 관련 상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판매중단 조치의무	•온라인플랫폼은 상표권자 등이 위조상품 발견·신고 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조치의무(기술·경제적으로 불가능 시 미적용) 발생
면책규정	•온라인플랫폼이 위조상품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미성립
정보제공	•온라인플랫폼이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성명, 주소)요청 거절 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보제공 명령

※ 온라인플랫폼 책임강화 관련 상표법 개정안('20.7~9월 발의) 산자중기위 계류 중

4 국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특허청)

- 정부가 국내외에서 우리기업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23~)

* ('23) 「발명진흥법」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장(章) 신설 추진 → (중장기) 국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강화를 위해 별도 법률 신설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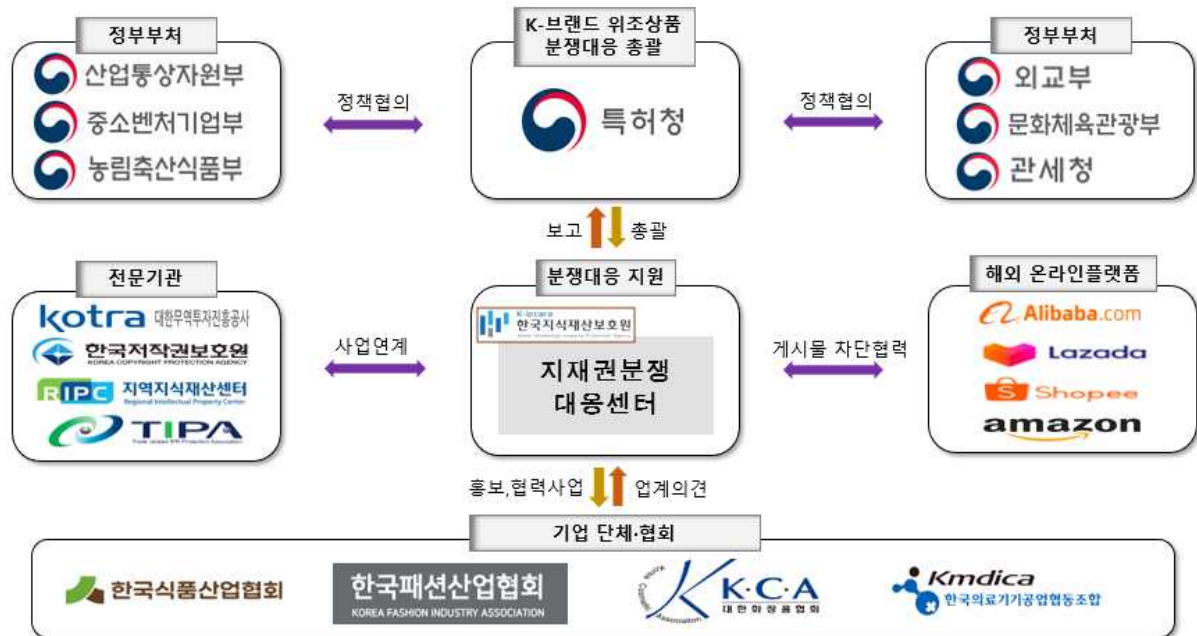
< 발명진흥법 중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장' 주요내용(안)>

- 특허청장이 매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시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 추진근거 상향입법(시행령→법) 및 신규업무 추가
-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등 산업재산권 분쟁현황 실태조사 근거규정 신설
- 해외 현지에서 수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소 및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지재권 전문가 선발 및 파견 근거 규정 마련

V. 추진 체계

- ◆ 특허청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K-브랜드 분쟁대응을 총괄하고,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통합·연계 제공

< 추진 체계 >



< 부처(기관)별 주요 역할 >

부처(기관)	주요 역할
특허청	K-브랜드 분쟁대응 방안 수립 및 시행 총괄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시책 이행, 성과점검 및 보완 - 기업들의 K-브랜드 분쟁대응 애로사항 발굴, 개선방안 마련 - K-브랜드 분쟁 모니터링 및 피해사례 종합 점검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관세청 등	- 해외 K-브랜드 분쟁 이슈발생 시 대응체계 유지 - 위조상품 유통정보 공유 및 식별교육 연계 등 협력
중소·중견기업 관련 단체·협회	-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지원시책 참여 및 홍보 협력 - 업계의견, 기업별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VI. 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담당부처(기관)
------	----	----------

[전략 1] [사전예방]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 강화

(1)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등 예방체계 구축	'23~	특허청
(2)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및 권리화 확대	'23~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3)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강화	'23~	기재부(조폐공사), 특허청

[전략 2] [피해구제]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지원 확대·고도화

(1) 민간역량을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확대	'23~	특허청
(2)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지원 신규 추진	'23~	특허청
(3) 국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세관·특사경 단속지원 강화	'23~	특허청, 관세청, 문체부

[전략 3] [대응기반] 위조상품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

(1)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신규 운영	'23~	특허청
(2) 해외 현지 지재권 침해피해 지원체계 확충	'23~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코트라), 특허청
(3)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법제화	계속	특허청
(4) 국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23~	특허청